

의안번호	2207734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5. 2. 20.
추계번호	25B038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6 신설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의6 신설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비용 지원(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4항)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라 함)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수,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기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이에 대한 지원의 기준·수준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전국 동물병원은 총 4,985개소임(2024년 6월말 기준)
 - ※ [참고자료] 전국 동물병원 개소 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전국 동물병원 개소 수(2024년 6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지역	동물병원 수
서울	900
부산	279
대구	194
인천	226
광주	122
대전	116
울산	73
세종	34
경기	1,249
강원	148
충북	158
충남	255
전북	218
전남	205
경북	346
경남	345
제주	117
합계	4,985